

<범위>

분말도(비표면적) 6,000~8,000cm²/g인 초미립자 시멘트(3S-1호)와 분말도(비표면적) 6,000cm²/g이상인 초조강 혼화재(3S-R호), 합성실리카가 일정 중량(kg) 비율로 혼합된 겔타임이 60~90초 범위인 완결형의 침투 주입재(3S공법)를 U자형 “연결관”과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장착되는 다수개의 “패커부”, “분지관”으로 크게 형성된 동시 다단 지반강화재 주입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큐빅스(강태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광승환)

나. 전화번호 : ① 031-625-9502 ② 02-510-3272

2. 명칭 : 단일앵커 방식의 교량받침 적용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받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교량받침 설치시 또는 유지보수시에 교량받침의 높이와 하부를 낮추어 교량받침 시공이 간편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받침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하부판을 제거하고 교량받침의 앵커를 단일화하여 소요 연단거리 및 형하고를 낮추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기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교량받침의 하부판을 제거하고 받침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전단핀과 하부앵커가 단일화 되며 전단핀의 길이를 연장하여 교각상부에 매립되어 교량받침의 앵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937호,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여야 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 지역인재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5)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하고, 채용비율은 2018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30%를 적용함

나.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3항)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연구직렬 채용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수가 지역인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함